통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30.] [총리령 제2072호, 2025. 12. 30., 타법개정]
국가데이터처 (통계정책과) 042-481-2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방문 확인 등의 대상인 통계의 명칭
2. 방문 확인 등을 하는 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3. 방문 확인 등의 사유 또는 필요성
4. 방문 확인 등의 시기
5. 방문 확인 등의 내용
6. 그 밖에 방문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8. 3.]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25. 10. 1.>

1. 정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 포함)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구술·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법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수정・보완,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지정신청의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또는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걸린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개정 2008. 5. 28.>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구술・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지정통계의 명칭 및 지정 연월일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8. 2. 21., 2025. 9. 30., 2025. 10. 1.>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구술·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2025. 10. 1.>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8. 2. 21.>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신설 2018. 2. 21., 2025. 9. 30., 2025. 10. 1.>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통계작성 변경·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2025. 10. 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5조(통계작성 변경·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2025. 10.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해당 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 승인번호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2025. 10. 1.>
② 영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1., 2025. 9. 30., 2025. 10. 1.>
③ 제1항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고, 제2항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전화・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독촉장)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국가통계승인 (협의) 마크) 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9. 2.>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 11. 5.]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4. 9. 2., 2025. 10. 1.>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8. 3.]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6. 8. 3.>]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제공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통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계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예산 및 인력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 또는 전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3. 9. 27.]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6. 8. 3.>]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간행물과 그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변경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4조 삭제 <2010. 6. 29.>

부칙 <제2072호,2025. 12. 30.>(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통계데이터기획과"를 각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 통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9.27>

통계작성 승인 등의 처리기간(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

처 리 내 용	관 계 규 정	처리기간
조사통계나 가공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10일
보고통계의 작성 승인(협의)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설계·조사(보고)사항·지수개편의 변경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그 밖의 사항의 변경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5일
지정통계 중지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일반통계 중지 승인(협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5일
통계작성 승인(협의)신청 시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 기준의 사용 동의	제13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통계작성 변경승인(협의)신청 시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 기준의 사용 동의	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7일

주 : 1. 처리기간 산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신청 서류의 수정·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등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
2. 처리내용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통계작성 및 통계작성 변경·중지의 협의 등은 통계작성 및 통계작성 변경·중지의 승인 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 통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1.>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제20조 관련)

주: 1.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의 크기는 지름을 1.5 ~ 3.0㎝로 하여 조사표(보고서식)의 표지 왼쪽 윗부분에 표시한다.

2. 보도자료 배포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승인(협의)통계명 왼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간행물 배포 시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간행물 표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조사표, 보도자료, 간행물의 색상 및 서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국가통계 승인(협의)마크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제　　호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국가데이터처

55㎜×85㎜[백상지 120g/㎡]

(뒤쪽)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

성　　명:

생년월일:

수행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통계법」 제9조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장 관인

1. 이 사람은 「통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사람은 「통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방문하여 통계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제　　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국가데이터처

55㎜×85㎜[백상지 120g/㎡]

(뒤쪽)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증

성　　명:

생년월일:

수행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통계법」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장 관인

1. 이 사람은 「통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사람은 「통계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방문하여 통계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0. 11. 5.>

국제기구 제공 통계 보고서

앞면

국제기구 요청 통계명
(영문)

① 요청 국제기구 및 제공기관

국제기구	제공기관		
	주관부서	협조부서1	협조부서2
기구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전자우편
	통계명	통계명	통계명
	비고	비고	비고

② 요청 및 제공 현황

국제기구 요청사항	총 제공률 및 출처			
요청목적	요구셀 개	통계명	통계명	통계명
요청방식	제공불가셀 개	보고서명	보고서명	보고서명
요청주기	제공셀 개	D/B명(URL)	D/B명(URL)	D/B명(URL)
요청일	제공률 %			
회신요청일	제공일	기타 내부 자료 등	기타 내부 자료 등	기타 내부 자료 등

③ 제공통계 제공률

통계명

항목명	요구셀	제공불가셀	제공셀	제공률	항목명	요구셀	제공불가셀	제공셀	제공률
	개	개	개	%		개	개	개	%

297㎜×210㎜[백상지 80g/㎡]

④ 미제공 항목 및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계획

통계명			
미제공 항목관리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
항목명	미제공 유형 및 사유	제공확대계획	자료제공심의여부 및 결과

⑤ 제공통계 모니터링

국제기구 활용사례	수치오류					
통계명	항목명	제공수치(국내)	활용수치(국제기구)	차이발생원인	조치내역	비고
간행물명						
D/B명(URL)						

작성방법

* 작성 기본원칙: 국제기구 제공통계기관을 대상으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2개 이상)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① 요청 국제기구 및 제공기관
○ 비고는 제공여부와 KOSIS 서비스 여부, 승인통계 여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제공여부: 전부제공, 부분제공, 미제공으로 구분
- KOSIS 서비스 여부: KOSIS에 서비스 되는 경우 ○,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 X 로 구분
- 승인통계 여부: 승인통계인 경우 ○, 미승인통계인 경우 X 로 구분

② 요청 및 제공 현황
○ 제공 출처는 각 제공통계에 대한 보고서명, DB명칭(주소), 내부 자료를 작성하며, 그 외 출처인 경우에는 기타 내부 자료 등에 함께 기입합니다.

③ 제공통계 제공률
○ 제공불가셀 수는 미제공 사유 유형이 아래 미제공 사유 유형 6가지 중 4번, 5번 또는 6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셀의 개수를 기입합니다.

④ 미제공 항목 및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관리계획
○ 미제공 유형 및 사유는 아래와 같이 6가지의 경우(1부터 3까지의 사유는 인력·예산 확보 등 통계 개선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추후 제공이 가능한 사유이며, 4부터 6까지의 사유는 국제기준이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를 의미합니다)로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합니다.
1. 해당항목의 조사가 가능하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2. 해당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나 자료의 신뢰성 결여
3. 예산 또는 기술 등 제약으로 미작성
4. 국제기준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미작성
5. 해당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지나, 자료가 국가기밀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
6. 국내 미생산품 등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제공확대계획은 제공시기, 예산 및 예상 인력 운용 등을 작성합니다.
○ 통계자료제공심의(또는 전문가회의) 여부 및 결정사항을 함께 작성합니다.

⑤ 제공통계 모니터링
○ 국제기구 활용사례: 국내 자료를 제공받은 국제기구에서 활용한 사례를 작성합니다.
- 간행물명은 상세하게 기입하고 D/B명은 활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카테고리를 함께 작성합니다.
○ 수치오류: 국내에서 제공한 통계수치와 국제기구에서 활용한 통계수치가 상이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 차이발생원인: ① 국제기구에서 별도의 산식을 이용하여 집계 ② 국제기구에 제출했으나 업데이트 안 됨 ③ 기타
- 조치내역은 수치오류 발견 후 수정요청 날짜 및 반영여부, 추후 조치 내용을 작성합니다.
○ 비고: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및 카테고리(위치)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기관	① 명 칭		
	② 설립근거		
③ 통계 작성·보급 관련 부서·인력·예산	부서명		
	인력 (계 명)	통계기획·분석·처리	명
		통계조사	명
		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명
	예산(경비) (계 천원)	통계기획·분석·처리	천원
		통계조사	천원
		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천원
④ 향후 통계작성·보급 계획			
⑤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1부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1부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 명칭: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설립 근거: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내용을 적습니다.
③ 통계 작성·보급 관련 부서·인력·예산
○ 부서명: 통계 작성·보급과 관련된 현행 담당 부서명 또는 향후 담당 부서명을 적습니다.
○ 인력: 통계 작성·보급 관련 부서의 현재 근무인원 또는 향후 근무인원을 적습니다.
○ 예산(경비): 통계 작성·보급과 관련된 연간 총 예산(경비)을 적습니다.
④ 향후 통계 작성·보급 계획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현재 작성하고 있는 수량적 정보 또는 향후 작성하려는 통계에 대한 작성·보급 계획(작성의 대상·항목·시기·방법 및 보급계획 등)을 적습니다. 특히 보급계획의 경우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로 통계데이터 전송계획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⑤ 그 밖의 참고사항: 위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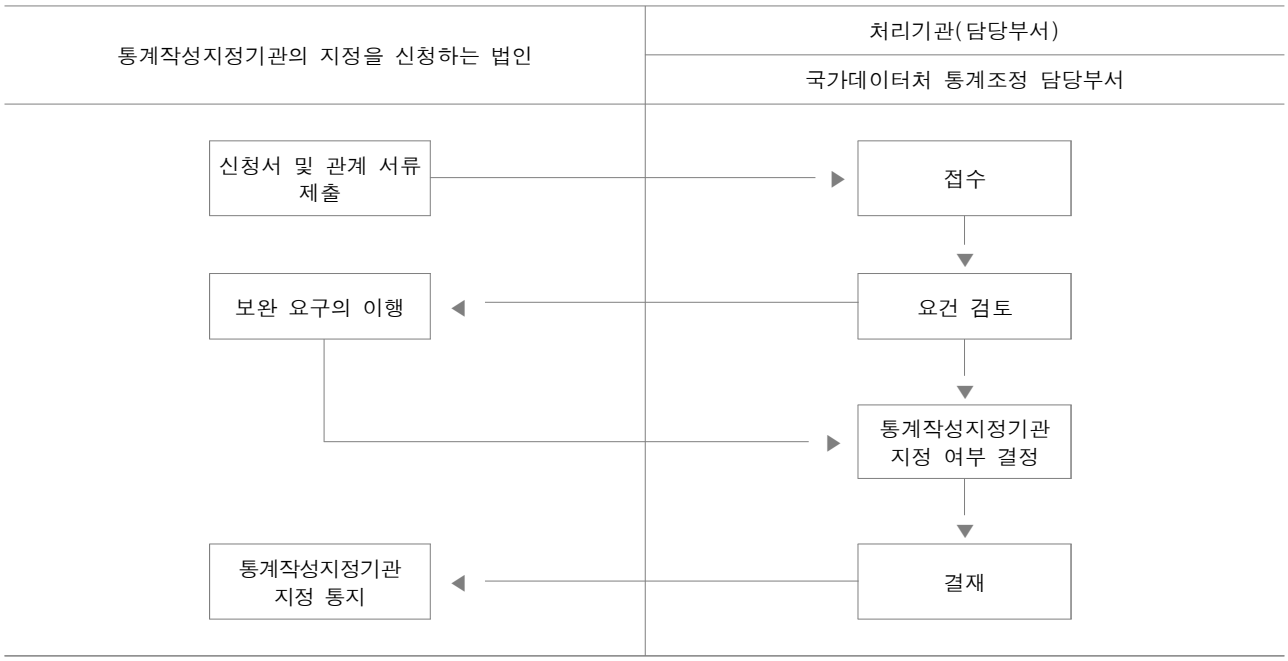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통계작성 지정기관	명 칭
	주 소

② 통계 작성 현황	통계의 명칭	통계의 종류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근거 및 이유	
	근 거
	이 유

「통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장 관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② 통계작성 현황: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명칭, 통계의 종류(일반통계 또는 지정통계) 및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를 적습니다.

③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근거 및 사유: 「통계법」 제1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적습니다.

1.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변경 요구,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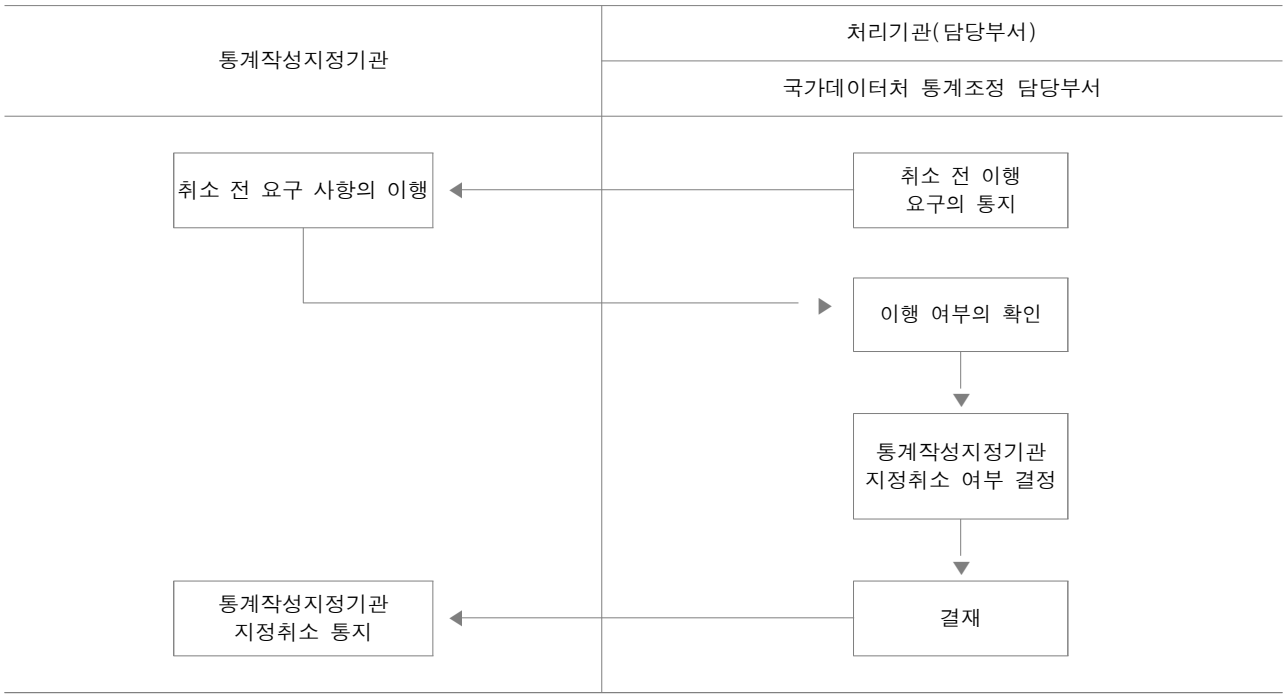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30.>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통계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 통계	① 명 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작성 기관명	
	④ 통계작성 목적	
	⑤ 지정통계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통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통계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⑤ 지정통계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통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정통계의 지정 필요성과 그 이유를 적습니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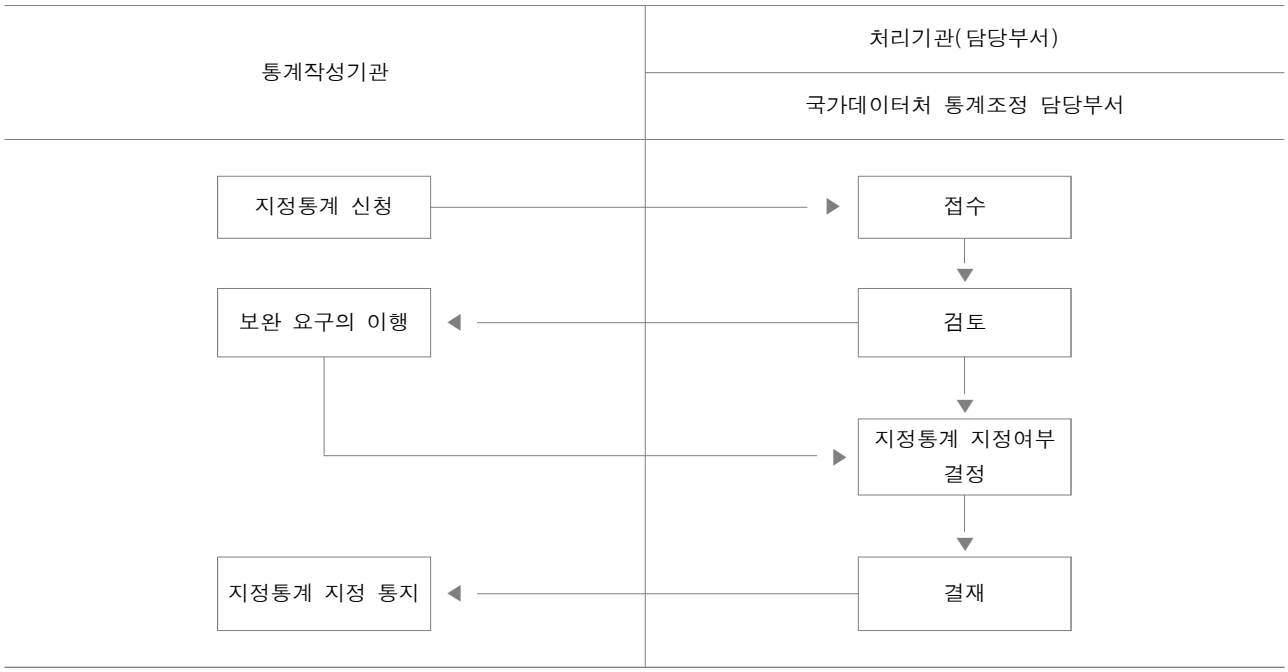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30.>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지정통계	명 칭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지정통계 지정의 연월일
	지정통계 지정 취소의 연월일
② 통계작성기관	명 칭
	주 소
③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근거 및 이유	근 거
	이 유

「통계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통계의 지정취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가데이터처장 관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지정통계의 명칭: 취소 대상인 지정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①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연월일: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시기를 적습니다.
③ 지정통계 지정취소 근거 및 이유: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이유를 적습니다.

※ 지정통계 지정요건(「통계법」 제17조제1항)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 지정통계의 지정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계작성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
지정요건 보완 요구의 이행 ◀	지정취소 전 요건 보완 요구
▶	이행 여부의 확인
	▼
	지정통계 지정취소 여부 결정
	▼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지 ◀	결재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30.>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조사통계, 가공통계) 7일(보고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③ 통계작성의 목적(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의 사항(주요 항목명 또는 작성 주요 통계표명)

⑤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모집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⑦ 조사 기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		[ ] 전수 [ ] 확률표본 [ ] 유의표본 [ ] 기타:
			[ ] 면접 [ ] 전화 [ ] 우편(팩스) [ ] 배포(유치) [ ] 집합 [ ] 인터넷 [ ] 관측 [ ] 기타:
	비조사	보고	[ ] 행정집계 [ ] 행정조사
		가공	이용통계명:
			자료명:
⑩ 자료수집 체계			
⑪ 통계작성의 분류 및 기준	[ ] 표준분류: [ ] 그 밖의 분류:		

⑫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1. 예 [ ]→ 작성기준명:	2. 아니오[ ] 3. 해당없음[ ]
	국제기구 제공 여부	1. 예 [ ]→ 국제기구명:	2. 아니오[ ]

⑬ 통계결과 공표	공표 예정일	
	공표 방법	[ ] 보도자료 [ ] KOSIS [ ] 기관홈페이지 [ ] 간행물 [ ] 기타:
⑭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조사통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번부터 ⑫번까지는 「통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입니다.

④ 통계작성의 사항: 주요 항목, 주요 결과표명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⑤ 통계작성의 대상

○ 모집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

○ 대상 범위 및 규모: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의 84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작성대상이 되는 개인·가구·사업체수, 작성하는 기관 수 등을 적습니다.

○ 대상 지역: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을 적습니다.

⑥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통계작성의 기준이 되는 시점(예: 매년 ○월 ○일) 또는 기간(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매월 ○일부터 ○일 등)을 적습니다.

⑨ 통계작성의 방법(※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합니다)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행정집계: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⑩ 자료수집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면·동 → 시·군·구(과/팀) → 시·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⑪ 통계작성의 분류 및 기준: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한국표준건강분류)를 적습니다. 표준분류와 다른 경우에는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은 분류를 적습니다.

⑫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하는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명칭을 적습니다.

○ 해당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명을 적습니다. (※ 여러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 모두를 적습니다)

⑬ 통계결과 공표

○ 공표 예정일: 작성하려는 통계의 공표 일정을 적습니다. (예: 매년 ○월 ○일, 매월 ○일, 매월 ○째 주 ○요일 등)

○ 공표 방법: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합니다. 기타 항목은 공표 방법을 직접 작성합니다.

⑭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송 계획: 통계데이터를 통계청에 전송하는 일정을 적습니다.
[예: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년 ○월, 전송 예정일(○년 ○월))]

처리절차

이 신청서(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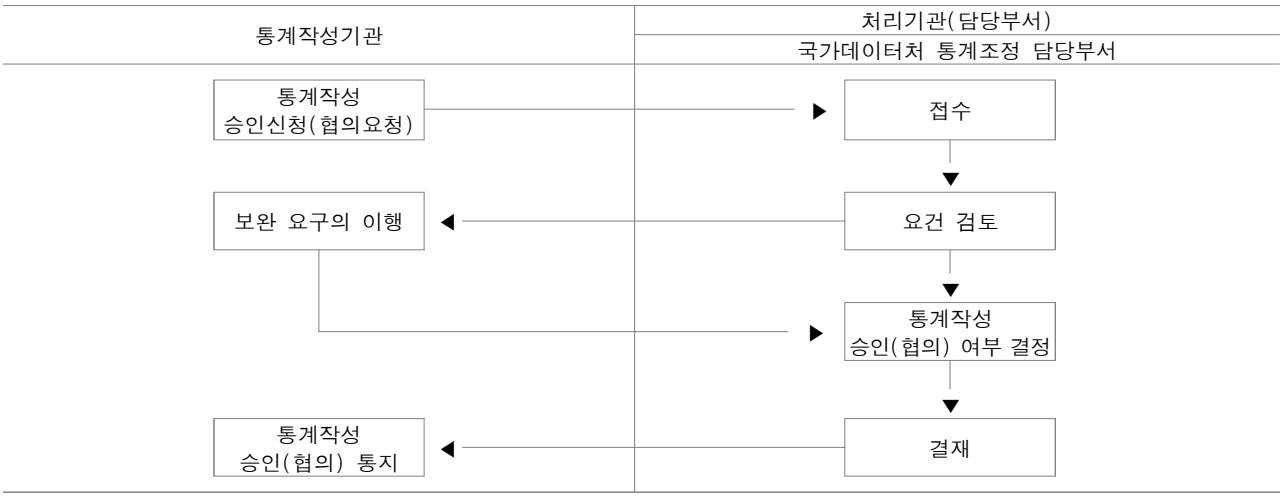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12. 30.>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작성 통계	명칭:	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작성 방법: 조사 [ ] 보고 [ ] 가공 [ ]	작성체계 :

② 검토 내용

작성 항목		행정자료				
작성 항목명	구분	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보유기관	활용가능 여부 * 활용이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 기재

「통계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자료 이용 통계작성 가능 여부 검토 결과 세부자료 1부 2. 기타 검토 관련 참고자료 등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작성 통계

◦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 작성 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 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 작성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등 통계작성 단위를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행정집계: 개인 ·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 · 면 · 동 → 시 · 군 · 구(과/팀) → 시 · 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② 검토내용

◦ 작성 항목: 작성 항목명을 적고, 구분란은 신규, 변경, 삭제 또는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신규: 새로운 작성 항목을 추가한 경우
- 변경: 작성 항목의 용어나 개념이 변경되는 경우와 작성 항목의 변경은 없으나 원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등
  * 기존에는 조사를 통해 작성하였으나 행정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행정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등
- 삭제: 기존에 작성해 온 항목을 삭제하는 경우
- 유지: 작성 항목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단순한 문구 수정이나 항목의 순서 변경 등

◦ 행정자료: 작성 항목(통계표)별 검토한 행정자료의 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보유기관, 활용가능 여부를 적습니다.

* 그 밖의 검토 관련 세부자료나 참고자료는 제출할 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결과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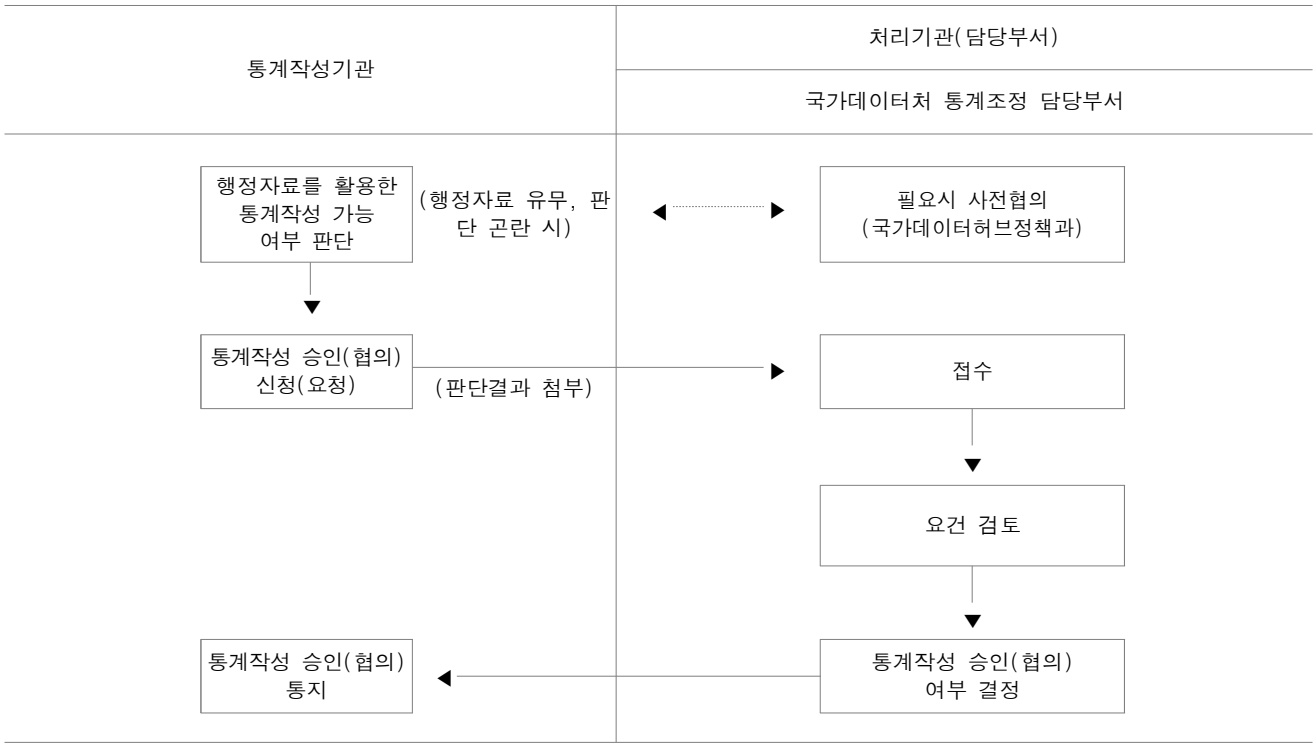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 ] 의뢰서 [ ] 결과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작성 통계	명칭:	작성주기:
	작성 목적:	
	작성대상: 개인 [ ], 가구 [ ], 사업체 [ ], 그 밖의 대상 [ ]	
	작성방법: 조사 [ ] 보고 [ ] 가공 [ ]	작성체계 :
② 통계작성기관	명칭	
	주소	

③ 검토 내용

작성 항목		행정자료				
작성 항목명	구분	행정자료명	관련 항목명	관련 서식	보유기관	활용가능 여부 * 활용이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 기재

「통계법」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결과)를 요청(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작성 통계

◦명칭: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 명칭을 적습니다.

◦작성 주기: 월간, 분기, 반기, 연간, 5년 등 해당 통계가 작성되는 주기를 적습니다.

◦작성 목적: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근거법률 등 작성 필요성을 적습니다.

◦작성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등 통계작성 단위를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작성 방법: 통계작성 및 자료수집 방법을 체크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조사: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보고: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행정집계: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또는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는 경우(신고한 자료의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가공: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적습니다.
(예: 읍·면·동 → 시·군·구(과/팀) → 시·도(과/팀) → 행정안전부(과/팀))

③ 검토내용

◦작성 항목: 작성 항목명을 적고, 구분란은 신규, 변경, 삭제 또는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신규: 새로운 작성 항목을 추가한 경우
- 변경: 작성 항목의 용어나 개념이 변경되는 경우와 작성 항목의 변경은 없으나 원천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등
  * 기존에는 조사를 통해 작성하였으나 행정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행정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등
- 삭제: 기존에 작성해 온 항목을 삭제하는 경우
- 유지: 작성 항목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단순한 문구 수정이나 항목의 순서 변경 등

◦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이 국가데이터처에 행정자료 활용 판단 의뢰 시, 작성항목에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의뢰서(결과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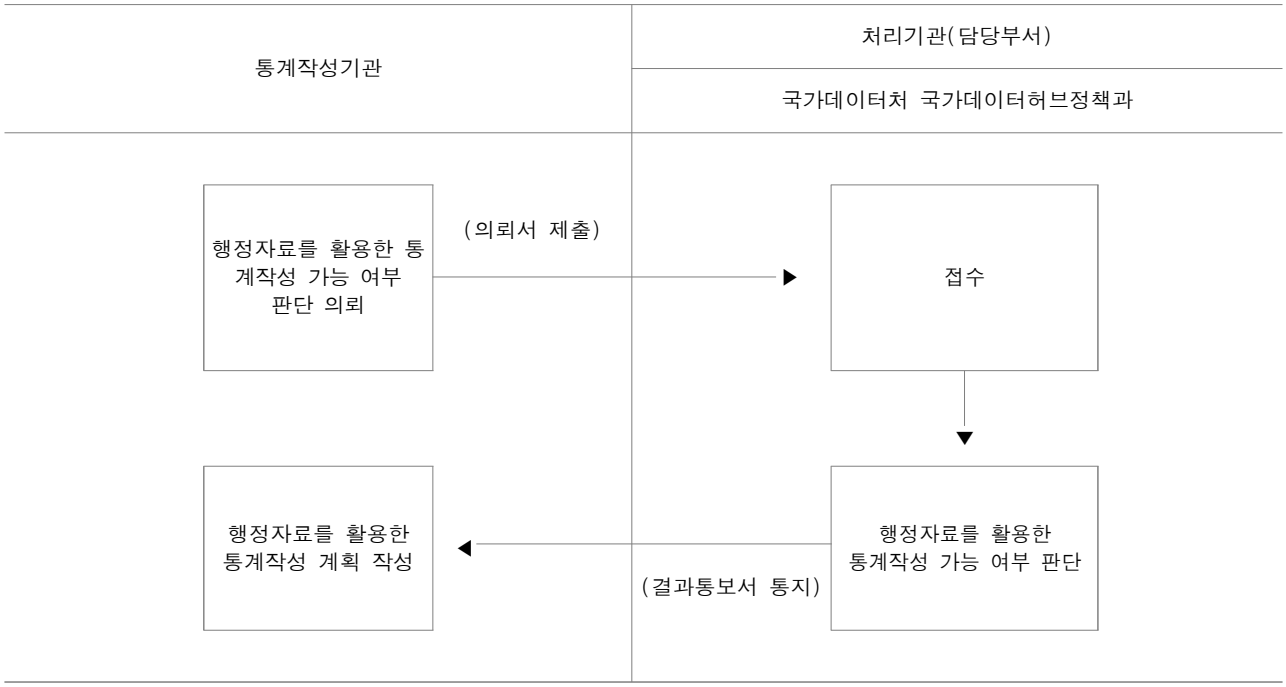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변경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설계·조사(보고)·지수개편 변경] 5일(그 밖의 사항)

신청 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④ 작성변경 연월일: 년 월 일	조사통계	[ ] 변경 후 조사 개시 예정일 [ ] 공표 예정일
		비조사통계	[ ] 공표 예정일

⑤ 변경 사항

승인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⑥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신청(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을 표시합니다)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조사통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위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작성변경 연월일: 통계의 작성 방법별로 통계의 작성 변경이 적용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조사통계: 변경 후 조사의 개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단,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 비조사통계(보고ㆍ가공통계): 통계의 공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⑤ 변경 사항: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를 거친 통계에 대하여 「통계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따른 승인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⑥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통계에 관한 근거 법률의 개정 여부 등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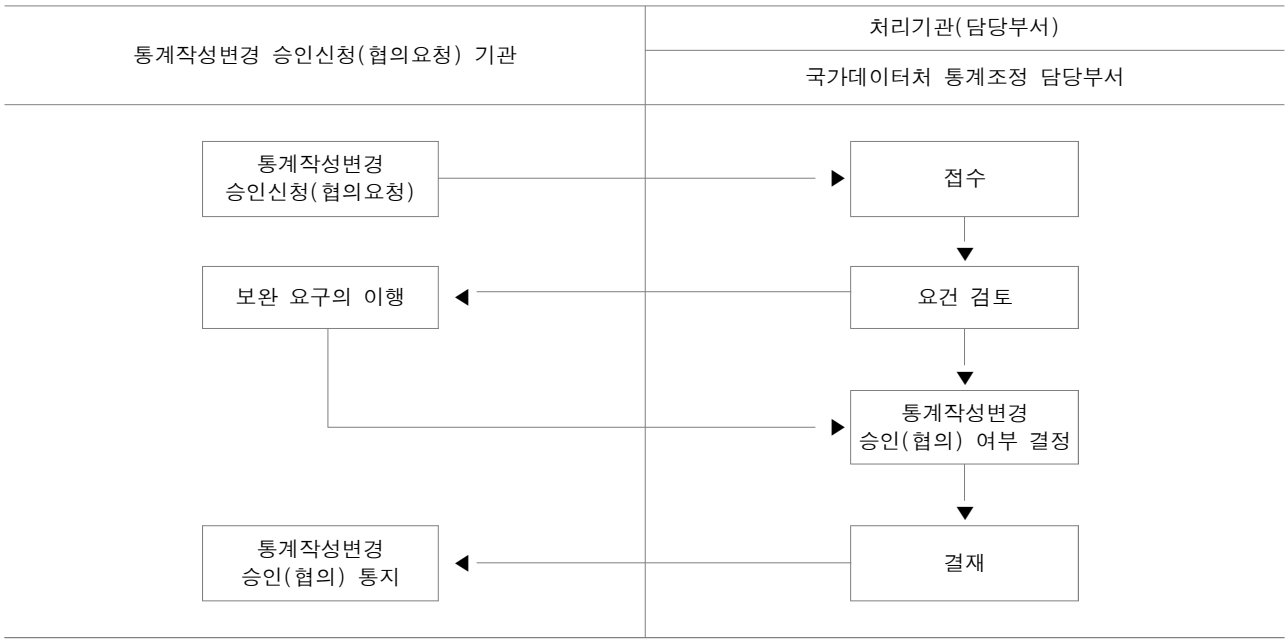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중지 [ ] 승인신청서 [ ] 협의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지정통계) 5일(일반통계)
신청 통계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번호			
	③ 통계의 종류 일반 [ ], 지정 [ ]			
	④ 작성중지 연월일: 년 월 일	조사통계	[ ] 조사 개시 예정일	
		비조사통계	[ ] 공표 예정일	
⑤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 사유				

⑥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작성 중지 승인을 신청(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통계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계작성중지 승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거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작성중지 연월일: 통계의 작성 방법별로 통계의 작성 중지가 적용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조사통계: 작성을 중지하려는 통계의 조사 개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 비조사통계(보고 · 가공통계): 작성을 중지하려는 통계의 공표 예정 연월일을 적습니다.

⑤ 통계작성 중지승인신청 사유: 통계작성을 중지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그 밖의 참고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협의요청의 경우 해당 통계의 근거 법률의 개정·폐지 등 변동사항 포함)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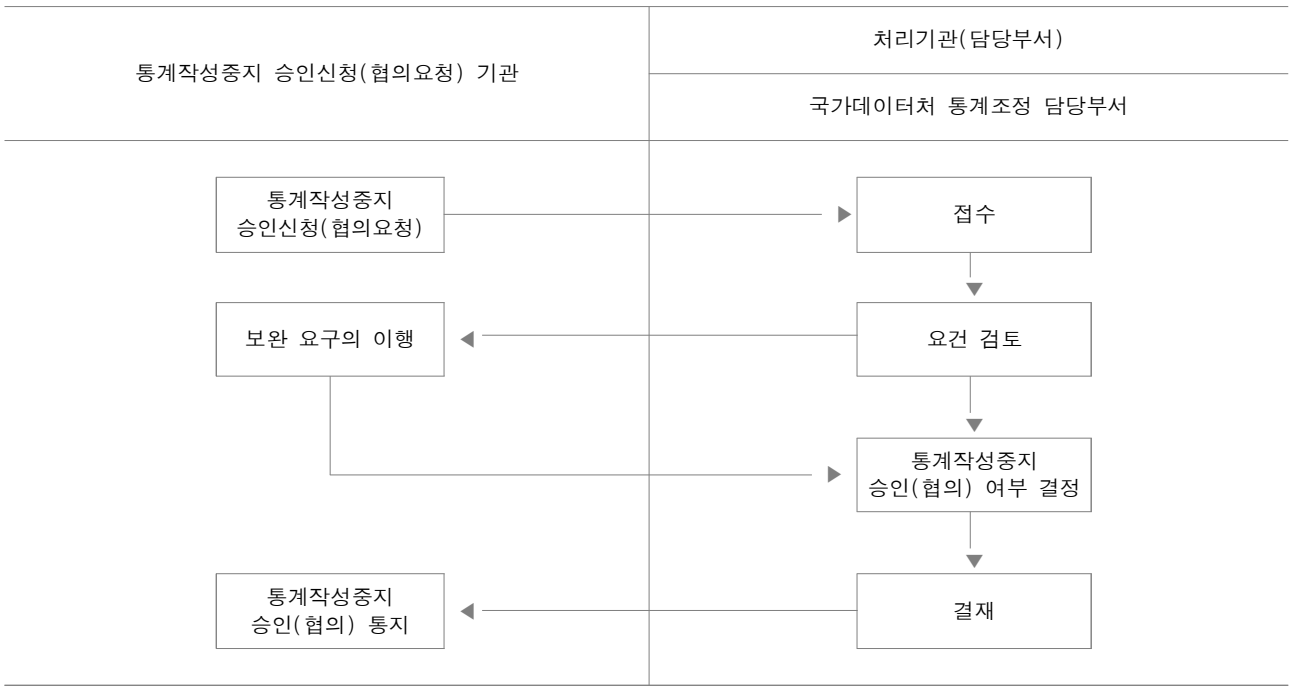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8.19.>

OO 통계자료에 대한 제O차 독촉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 통계	① 명 칭
	②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요구 사항	③ 보고 기일
	④ 보고 요구 사항
	⑤ 보고 요구 이유

「통계법」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자료를 요구하오니 보고 기일까지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통계의 명칭: 보고를 요구 받아 작성하려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고 기일: 회신기관에서 보고하여야 할 날짜를 적습니다.
④ 보고 요구 사항: 보고되어야 할 통계의 보고내용 또는 이미 송부한 자료 중 누락된 것으로서 보고받으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⑤ 보고 요구 이유: 보고 요구 기관에서 해당 자료의 이용 계획, 통계작성 지연 등 보고를 요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예: 모집단 정보를 얻어 표본 추출에 사용 등)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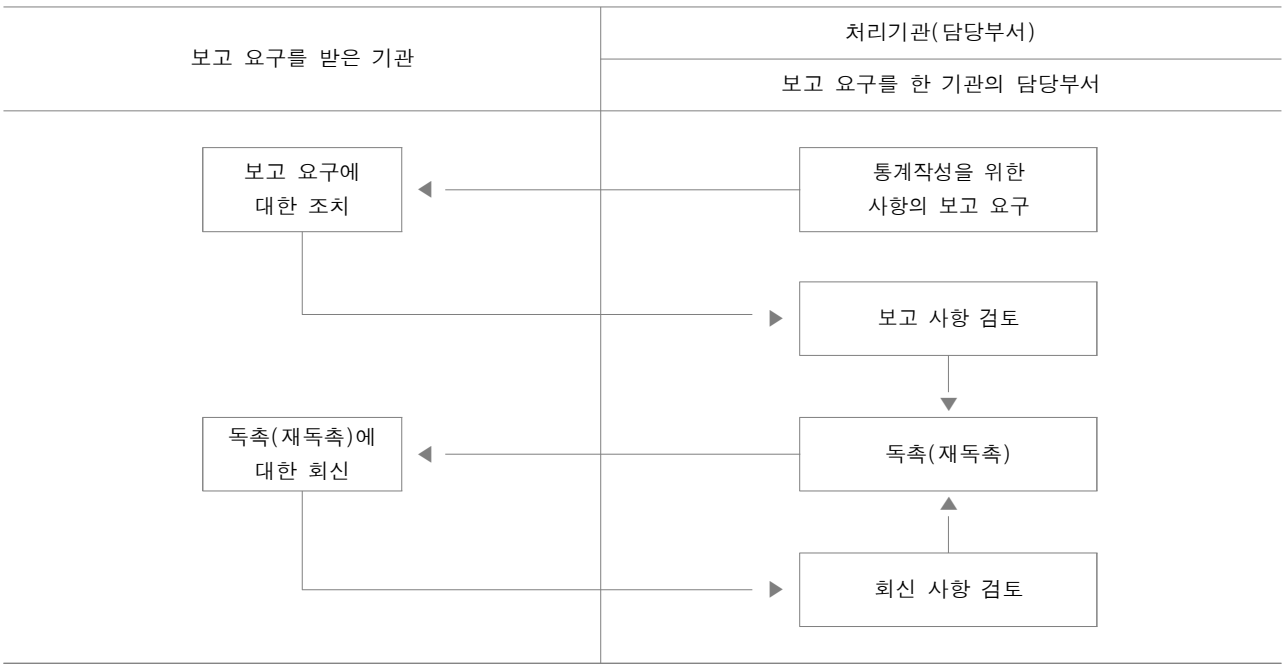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8.19.>

OO 통계자료에 대한 제O차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 통계	명 칭
	통계작성 승인(협의) 번호
보고 사항	① 보고 기일
	② 예정보고 기일
	③ 보고 사항
	④ 보고 지연 사유
	⑤ 보고 지연에 따른 조치 내용

「통계법」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보고 기일: 독촉장에 적힌 보고 기일을 적습니다.
② 예정보고 기일: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요구기관에서 지정한 보고기일에 해당 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의 예정 보고일을 적습니다.
③ 보고 사항: 독촉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내용을 적습니다.
⑤ 보고 지연에 따른 조치 내용: 「통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 지연기관의 조치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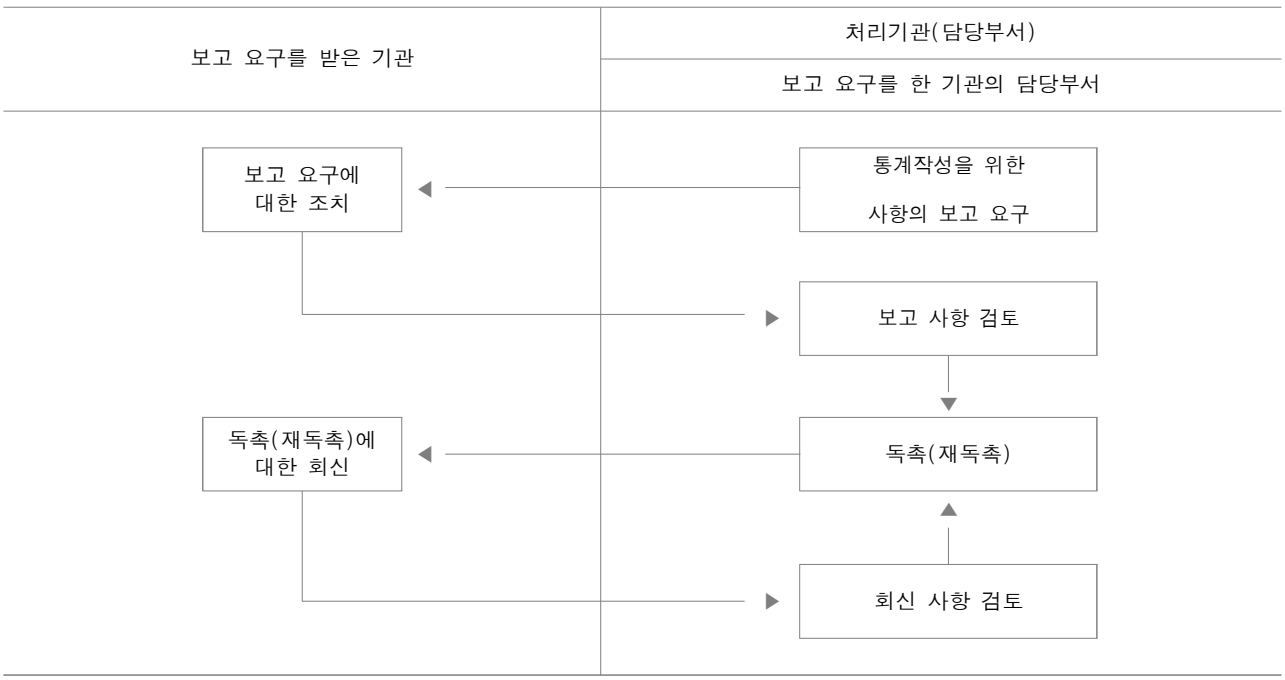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1. 5.>

(앞쪽)

제　　호

통계조사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통계작성기관의 장

가로 55㎜×세로 85㎜

(뒤쪽)

통계조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수행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정부가 승인한
OOO조사의 통계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통계작성기관장 관인

1. 이 사람은 「통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5. 12. 30.>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

통계명	제공일시	제공한 자		제공방법	제공받은 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작성방법

1. 통계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한 통계명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공표자료 제목과 통계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공표자료 제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소속은 기관명과 소속 부서(과)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

2000년 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

연번	공표일자	통계명	통계내용		공표(예정)일시	
			변경여부	변경사유	변경여부	변경사유

작성방법

1. 통계명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한 통계명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공표자료 제목과 통계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공표자료 제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여부는 변경, 미변경 으로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나라통계시스템(http://narastat.kr)에서 전자신청하는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계간행물 [ ] 발간 [ ] 변경 [ ] 중지 내역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통보 내역	① 통계간행물 명칭	
	② 발간기관 및 부서	
	③ 발간 주기	
	④ 판매여부 총 부 중 대외 판매 부	
	⑤ 발간(발간변경, 발간중지) 연월일	
	⑥ 발간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⑦ 발간중지 사유	
	⑧ 그 밖의 참고사항	

「통계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간행물 발간/변경/중지 내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관인)

국가데이터처장 귀하

첨부서류	1. 통계간행물 책자 3부(발간 · 변경발간 시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① 통계간행물의 명칭: 간행물의 표지에 실린 간행물 명칭을 적습니다.
② 발간기관 및 부서: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적습니다.
⑤ 발간(발간중지 · 발간변경) 연월일: 통계간행물을 발간(중지 · 변경)한 시기를 적습니다.
⑥ 발간변경 내역: 통계간행물의 명칭, 발간주기, 수록통계표의 추가, 삭제 등 변경한 경우 그 내역을 적습니다.
⑦ 발간중지 사유: 발간을 중지하게 된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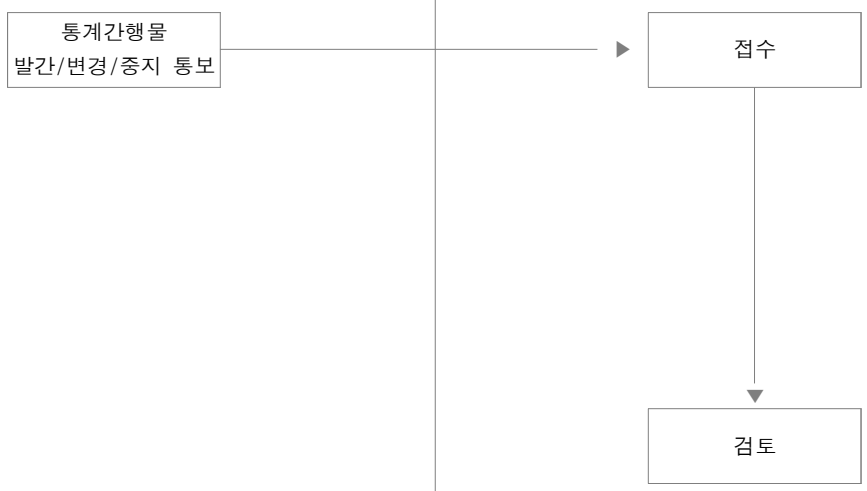
통계간행물 발간 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정 담당부서